

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사무소 소재지		

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교육 인력·시설·설비 확보 현황 자료 2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. 교육 평가계획서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.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.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